

【부천시 공고 제2026-2220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부천시 재무관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부천시 **수도시설과(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 지급 등)은 부천시 **수도시설과 및 수도행정과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도당동 일원(K20)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총공사금액		금946,670,000원	입찰서 접 수	접수	2026. 8. 27.(목) 10:00
기 초 금 액		금549,843,000원		마감	2026. 9. 3.(목) 10:00
	추 정 가 격	금499,857,273원			
	부가가치세	금49,985,727원			
도급자관급자재		금371,188,000원	개 찰	일시	2026. 9. 3.(목) 11:00
관급자관급자재		금25,639,000원		장소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A 값		금64,913,827원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 474,878,245원)

- ◆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 유지보수공사/ 지역제한(경기도)/ 업종제한 [전문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입니다.
-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11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개찰 1순위인 경우 해당 공사 건설업종(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 납품,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본 공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입찰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본 공고문 약칭]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예규]

1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69-2번지 일원

나. 공사내용

- 노후관 교체(D150mm): 1,194m, 제수변실 정비 : 13개소 등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라. 하자기간: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2 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
-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에 등록된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 **종합건설업자가 개찰 1순위인 경우에는**,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를 적격심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 및 [별표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에 따라 등록기준 점검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항 목	제 출 서 류
기술능력	○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비고란에 자격을 가진 해당업종을 개인별로 기재) ○ 기술인 자격증 사본, 기술인 경력증명서 사본, 기술인력보유증명서 중 하나 - 자격증 사본은 주의사항 면을 같이 복사할 것 ○ 기술인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www.4insure.or.kr)
기 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법인명으로 1부만 제출) ○ 건설기술자 실제근무 확인서 (기술자가 직접 작성 후 자필 서명)
주의사항	○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회사의 등기임원(감사 포함) 등 상시 근무를 하지 않거나 개인사업을 영위하여(개인 건설기계를 이용한 일용직 등)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록기준 미달 및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 **【문의 및 정보 제공처】** 참조

5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	공표기관	비고
제비율	조달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표준품셈	건설기술연구원 (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단위 작업량
시설자재가격	조달청,전문가격조사기관등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적용제외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분	해당항목	근거	비고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개별법령에서 규정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6.5%), 이윤(15%),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6

입찰보증금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입찰 보증금은 전자입찰 시스템 상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다. 입찰 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pm 3\%$ 범위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순공사원가 : 474,878,245원)**
-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하는 건설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합니다.
- 마. 적격심사 부적격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적격통과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사.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가. 이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약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다. 아울러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약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약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됩니다.

-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6,256,485원	국민연금보험료	8,266,56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22,10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606,927원
퇴직공제부금비	4,002,758원	안전관리비	30,923,473원
품질관리비	4,035,516원	합계(A값)	64,913,827원

- 다. 상기 금액 중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 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같은 입찰에서 같은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무효입찰에 해당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나 대여자)는 2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유의사항

- 가. 낙찰자는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나.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사에 드는 자재나 물품은 부천시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과 공사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50% 이상을 부천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다.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요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 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 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약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차.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문의 및 정보제공처】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부천시 수도시설과 (주무관 박근영)	☎ 032-625-3302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김하늘)	☎ 032-625-2663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당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